

### 13-가.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 결산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**대학** 대학원 **전문대학** **대학원대학**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2026년 6~8월(대학도서관 통계)

【공시시기】 : 2026년 10월

【공시방법】 : 간접입력(한국교육학술정보원)

【공시내용】 : 2026년 장서 보유, 직원 현황 및 2025년 도서관 결산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(재학생 수) 2025. 4. 1., (장서) 2026. 3. 1., (결산) 2025년 결산, (직원수) 2026. 4. 1.)

(단위: 명, 권, 원, %)

기준연도	재학생 수 (A)	도서자료			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		비도서자료 (종)	전자자료			인쇄형 연속간행물					
		계 (B)	국내서 (책)	국외서 (책)	증가 (책)	폐기 (책)		계	국내 (패키지)	국외 (패키지)	계	국내 (종)	국외 (종)			
대학 총결산 (C)	자료구입비 (D)	학생 1인당 도서자료 수 (B/A)	대학 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(D/C×100)	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(D/A)	도서관 직원 수									합계 (E+F)		
					정규직					비정규직						
					1급 정사 서	2급 정사 서	준사 서	미소 지자	소계 (E)	1급 정사 서	2급 정사 서	준사 서	미소 지자	소계 (F)		

※ 사이버대학의 경우, 동일법인의 도서관을 활용할 경우 동일법인 적용 내용을 비교란에 입력함(양식에는 재학생 수 및 대학 총결산만 입력함)

■ 작성지침

【재학생수】 : 2025. 4. 1.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(정원내+정원외)의 합

※ 통폐합대학의 경우,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수도 포함

【도서자료-국내서】 : 국내에서 간행된 단행본, 연속간행물 제본, 학위논문 등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 수를 기재. 단, 소장 개념의 국내 e-book 포함

【도서자료-국외서】 : 국내서를 제외한 등록번호가 부여된 책수를 기재(소장 개념의 국외 e-book 포함)

【연간 도서자료 증가 책수】 : 대학도서관 도서자료의 연간 증가 책수와 연간 폐기 책수 기재(등록번호 기준)

【비도서자료】 : CD 또는 DVD(LD(레이저디스크) 포함), 테이프(오디오테이프 포함), 음반(악보자료 및 LP 디스크 포함), 마이크로 필름(슬라이드필름 포함) 등

【전자자료】 : 전자저널, 웹DB와 같은 자료로써, 도서관에서 계약하여 현재 구독 중인 자료

※ 저널의 개별 종수가 아닌 구독 계약의 단위를 1개 패키지로 간주

【인쇄형 연속간행물】 : 2026. 3. 1. 기준 구독 중이거나 기증된 인쇄형 연속간행물의 종수를 기재

【대학 총결산】 : 2025년 회계연도 결산

- ① 국·공립대학: <8-가-2> 대학회계 세출 결산 합계
- ② 사립대: <8-바-2>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중 자금지출 총계

13.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

**【자료구입비】** : 도서자료, 연속간행물, 비도서자료, 전자자료 구입을 포함한 순수 자료구입비 결산

**【학생 1인당 도서자료수】** : (국내서 + 국외서) / 재학생수

**【대학 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】** : (자료구입비 / 대학 총결산) × 100

**【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】** : (자료구입비 / 재학생수),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

**【직원 수】** : 2026. 4. 1. 기준 대학의 회계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(대학 및 대학원 소속이며, 도서관으로 발령받은 직원) 인원 수

**【정규직】** : 기관의 통상근로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직원 수 입력(주 40시간 근무자 기준)

**【비정규직】** : 학교 또는 도서관과 기간을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(全日制, 정규직 통상근로자 근무시간 기준)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수

• 비정규직 :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,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를 말함

**【사서 자격 기준】** : 「도서관법 시행령」(2026. 1. 27. 개정) [별표4]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 요건 적용

※ 아래 지침은 자격 기준의 일부만 명시하였으며, 상세 내용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[별표4] 참조

**【1급 정사서】** :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,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·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

**【2급 정사서】** :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(같은 조 제4호 전문대학은 제외)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) 등

**【준사서】** :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(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)에서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) 등

**【미소지자】** : 1급 정사서, 2급 정사서 혹은 준사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

## ■ 참고사항

- 장서 보유 및 도서관 결산 현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
- 재학생 수는 2025년 <4-마> 재학생 현황 활용
-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 요건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[별표4] 세부 내용을 모두 적용